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86회 임시회
‘20. 10. 14.(수)

-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-

검 토 보 고 서
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0년 10월 5일

○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6일

3. 제안사유

○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9조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신축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, “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”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○ 위탁대상 :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

※ 신축 근로자종합복지관 준공예정일 : '20. 12. 14.

○ 위　　치 : 충북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산12-2

○ 규　　모 : 부지 3,305㎡, 건물연면적 2,565㎡ / 지하1층, 지상4층

○ 위탁기간 : 위·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

○ 수탁기관 : 도내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
※ 現 근로자종합복지관 수탁기관 :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

○ 위탁방법 : 공개모집

○ 사 업 비 : 83,580천원(도비 100%)　* 연도별 변동가능

○ 위탁 주요사무

-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·교육사업
-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
- 각종 교육·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과 체육·문화사업

- 근로자 및 그 가족,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근로자복지를 위한 사업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우경수)

가. 제출배경

○ 現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은「근로복지기본법」제28조에 의한 근로복지시설로, 같은 법 제29조 및「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」제4조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.

※ 위탁운영 약청체결 현황

- 現 수탁기관 :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

1차	2차	3차
‘14. 7.21.~ ’17.7.20. (위탁)	‘17.7.21.~ ’20.7.20. (재계약)	‘20.7.21.~ 신축 근로자종합복지관 입주시까지 (재위탁)

○ 본 동의안은 신축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하여「근로복지기본법」제29조 및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 제5조에 따라 2021년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.

나. 주요내용 및 의견

○ 신축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은「근로복지기본법」및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위탁이 가능 한 시설로,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,

-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.교육사업,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, 각종 교육·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과 체육·문화사업, 근로자 및 그 가족,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, 그 밖에 근로자복지를 위한 사업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.

○ 신축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 위탁은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 근거한 것이며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기능 측면에서 볼 때 이에 해당 한다고 판단됨.

※ 「근로복지기본법」**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**
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**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**할 수 있다.

※「충청북도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
3. **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**
4. 시설관리 및 단순행정 사무
5. 그밖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무

○ 또한, 現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개소 이후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, 운영 상 특별한 문제없이 관리되어 왔음.

※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(개정일 2018. 10. 01.)

- **제5조1항**에서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라고 규정하고 있고, 제5조2항에서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

부칙 제2조(의회동의 절차의 특례)에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**제5조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고 규정**하고 있음.

- 그러나, **現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난 7월 3회차 재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**하였음.

* 위탁현황 : '14.7.21.~'17.20.(1회차), '17.21.~'20.7.20.(2회차), '20.7.21.~신축 근로자종합복지관 입주시까지(3회차)

○ 따라서, 신축 근로자종합복지관(2020. 12. 14. 준공예정)은, 官의 직영보다는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도내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.

○ 다만, 관리부서에서는 향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, 4회차 계약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필히 받도록 할 것이며,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·감독으로 방만 운영, 부실 운영 등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.